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 이용 목적 중증장애인 탑승 차량에 대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일시 이용 허용〉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860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86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7. 30.

(3) 회 부 일 : 2025. 7.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필수적임.

그런데, 자가용이 없는 중증장애인이 타인의 자동차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는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② (생략)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이 같은 「장애인등편의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 또는 재활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태운 자동차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중증장애인 등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전체 장애인의 88.5%는 치료 또는 재활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싶었음에도 가지 못한 이유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이 불편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1/3 이상이 이동 문제로 의료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¹⁾

□ 다만, 개정안은 입법형식의 적절성, 적용 대상의 명확성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기술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예외를 법률에 직접 신설하기보다는, 의료기관등 이용이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하여 중증장애인 탑승 차량의 별도 주차 공간 제공을 하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2023-132).

-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 둘째,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이 의료기관 이용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상 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시 주차를 허용할 경우, 현장 혼선과 단속의 실효성 저하가 불가피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큼.

-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 여부와 탑승자 확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므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법률상 예외 해당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고,
- 이로 인해 허위 주장이 발생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예외 차량 증가 시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로, ‘중증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등에서 각 법률의 입법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각 법률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정의>

법률	중증장애인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6조2)	•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4)	•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동 법률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 주차를 금지한 현행 규정에 더해, 동 개정안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태운 차량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일시적 주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③ (생략)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u><단서 신설></u>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다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등 이용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시 이용토록 하려는 취지는 공감함.
- 다만,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대상은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 운영 원칙과 충돌함.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및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체계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주차 대상을 규정할 경우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훼손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예외규정을 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발급이 가능하나, 자가용이 없는 보행상 제약이 있는 경증장애인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나. 관계 기관

기관명	의견
서울특별시	- 기존 <u>장애인의 주차난</u> 가중 등 고려하여 <u>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u>, 고밀도 대도시 특성상 <u>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현 제도에서도 장애인주차표지 오남용 사례 증가</u> 추세임. ※ '24년 기준 중증장애인 비율 37%(통계청)인데 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주차 구역 3% ※ 장애인주차표지 오남용 사례: '19년 341건 → '24년 1,111건
한국장애인개발원	현재 주차표지 발급 대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u>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의 임시 주차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u>, 이로 인해 <u>간판·안내시스템·운영체계 정비 등 현장 혼선 및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u>.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시적 또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전용' 지정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한국지체장애인협회	<u>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 필요</u>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상시적인 민원 대상이며, 단속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제도적 일관성과 현장 단속 실효성을 고려할 때 <u>예외 조항을 만들기보다 의료기관 중심의 현실적 대안과 장애인주차구역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u>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u>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 개정안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중증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u>.

기 관 명	의견
	• 다만 <u>보건복지부령에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자동차에 탔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u>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u>이용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되어 기존 이용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어 오히려 혼란과 제도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u> • 또한, 진료·재활목적 등 <u>입증 방식 불명확함으로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전용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 개선 필요</u>

문 의 처
02)6788-5502